전 기 용 품
생 활 용 품
어린이제품

리 콜 제 도 가 이 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1. 제품 안전성조사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에서는
  사업자가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제조 · 유통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안전성조사: 유통 중인 제품을 구입 · 조사하여 제품 인증 당시의 품질과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 제품안전관리 제도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안전성조사 등)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 · 설계 또는 제품상의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해 검증 · 검사 ·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품 수거등의 권고 등) 및 제11조(제품 수거등의 명령 등)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리콜 등의 행정처분

2. 리콜제도란?

- 제품결함으로 신체 ·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불법 · 불량제품을 제조 · 수입 · 유통한 사업자는 유통망 또는 소비자로부터 회수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

- 국표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과 공동으로 사업자가 해당 불법 · 불량제품을 신속히 수거 등(이하 리콜)의 조치를 취하도록 주기적으로 리콜 이행 실적점검을 실시

  -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제품에 대한 수거 · 파기 · 교환 · 환급 · 개선조치 또는 제조 · 유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수거 등"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본 매뉴얼에서는 이를 **"리콜"** 이라고 정의함

3. 행정처분 절차 흐름도

- 안전성조사는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실시하며, 법적 안전기준 부적합(불법 · 불량) 내용에 따라 리콜 명령, 리콜 권고, 개선조치 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 국표원은 행정처분 최종 확정 전에 사업자에게 처분내용(리콜 명령 · 권고, 개선조치 권고)을 공문으로 사전 통지(전자메일 발송)하며, 동 처분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의견제출서 제출 또는 청문회 참석*을 통해 국표원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 리콜 명령 ·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의견진술 여부와 관계없이 청문회 필참 (단, 개선조치 권고 사업자는 선택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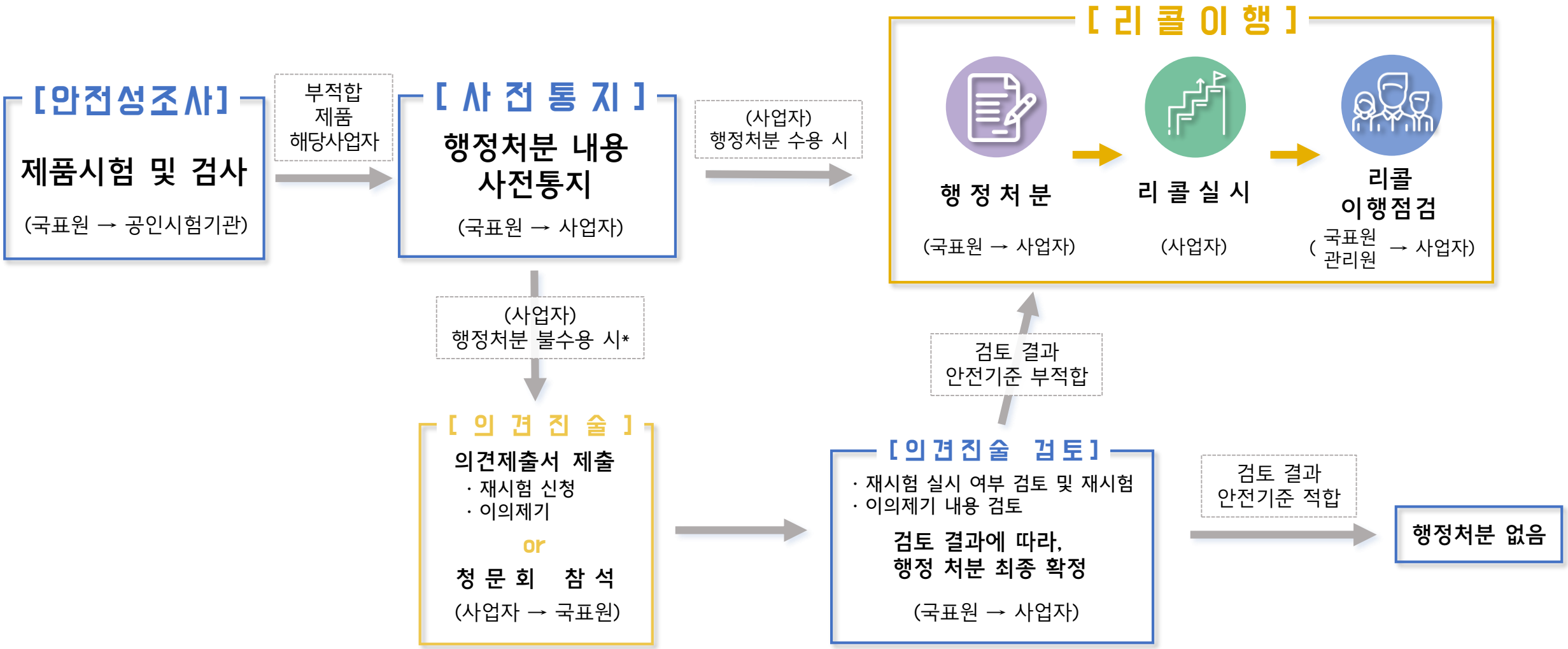

4. 안전성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종류

행 정 처 분		전기용품 예시	생활용품 예시	어린이제품 예시
수거등의 명령 (리콜명령)	• 사유 - 부적합 내용이 최중결함 • 수거 · 환불 등의 리콜이행 • 언론 등에 공표	품목 전기매트 사유 최고온도 초과 부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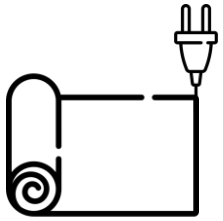	품목 러닝머신 사유 비상정지 부적합 	품목 유모차 사유 접힘 방지 잠금장치 부적합
수거등의 권고 (리콜권고)	• 사유 - 부적합 내용이 중결함 • 수거 · 환불 등의 리콜이행	품목 직류전원장치 사유 내화성 부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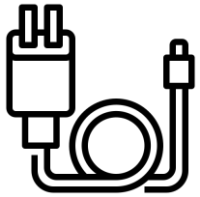	품목 전동킥보드 사유 최고속도 초과 부적합 	품목 완구 사유 돌출부 부적합
개선조치 권고	• 사유 -부적합 내용이 경결함 • 수거 · 환불 등의 의무는 없으며 부적합 내용 개선 후 판매가능	품목 멀티콘센트 사유 기계적 강도 부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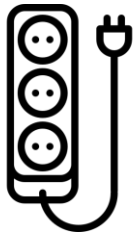	품목 스노보드 사유 바인딩부착 부위 부적합 	품목 노리개젖꼭지 사유 표시사항 부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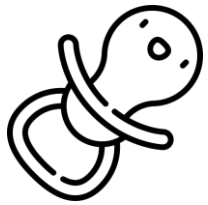

* 전기용품 · 생활용품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근거하여 최중결함, 중결함, 경결함 결정

5. 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진술

☑ 국표원의 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청문회를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5-1. (사업자) 의견 진술

의견 제출서 (양식1)	재시험 신청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요건 - 사업자는 그간 품질관리를 했다는 증빙자료(시험성적서 등)를 제출해야 함. 단, 최초 인증 시험성적서는 불인정 재시험비용 - 시료구입비와 재시험수수료 등 전액 사업자 부담
	이의제기 (표시사항 미비 및 결함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요건 - 이의제기 근거(증빙 사진 등) 첨부
청 문 회 (1:1 청문)		목적 - 의견진술 기회 제공 및 행정처분(리콜, 개선조치)에 대한 안내 참석대상 - 리콜 명령 ·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필참 - 개선조치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선택

* 해당 양식1은 9 첨부자료를 참조

5-2. (국표원) 의견 진술 검토

- 재시험
  - 사업자의 재시험 요청 사유와 증빙자료의 타당성 검토 후, 재시험을 실시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시험실시를 결정하고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재시험 실시

< 재시험 실시 절차 >

사업자의 재시험비용 부담	→	공인시험기관 재시험 진행	→	시험결과 통보 및 행정처분 확정
정부는 재시험 대상으로 결정된 해당 사업자에게 재시험 실시 결정 사실과 소요되는 제반비용(동일 시료 2개 구입비, 시험 수수료)을 통보해주며, 사업자의 비용 납부 확인 후 재시험 실시		재시험은 동일한 시중 유통제품 2개를 구입하여 진행하며, 당초 안전성조사에서 해당 제품을 시험한 1차 시험기관과 제3의 시험기관에서 각각 1개씩 시료를 나눠서 시험 진행		2개 시료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행정처분 무효 처리하며, 재시험을 실시한 2개 시료 중 1개의 시료라도 법상 안전기준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 정부가 사전통지한 행정처분이 변경없이 최종 확정

- 이의제기
  - 결함내용 및 개선조치 권고(안)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은 사업자가 제출한 소명근거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당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공문으로 회신함
    * 사전 처분 통지된 내용 이외의 단순한 의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신하지 않음

6. 리 콜 이 행 절 차

☑ 사업자는 국표원으로 부터 행정처분 공문 수령 즉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리콜 사실 대외공표, 리콜 제품 현황 파악, 리콜 계획서/결과보고서 제출., 리콜 이행, 리콜 이행점검 대응 등의 의무를 책임있게 이행해야함

6-1. 리콜 계획서 제출 前

리콜 제품 즉시 판매 중지 ①

○ 자사의 온 ·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중지 조치
○ 유통망(총판, 도매, 소매) 및 온라인 몰에 판매 중지 요청

② 리콜 사실 대외 공표(지속)

○ (온라인) 자사 홈페이지, 온라인몰에 리콜 사실 공표
○ (오프라인) 매장에 리콜 사실 공표 포스터, 배너 게시
○ (언론) TV,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리콜 사실 공표
○ (개별 통지) 리콜제품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 통지
(사업자 → 유통망) 유통망에 제품 수거 요청 공문(양식2) 발송
(사업자 → 소비자) 소비자에게 리콜 사실 안내 문자(양식3) 발송

리콜 제품 현황 파악 ③

○ 리콜 제품 제조·수입량 및 유통현황 파악

<리콜 제품 유통현황 별 분류>

재고 물량	창고에 보관중인 자체 재고 물량
	출고되어 유통망에 보관 중인 재고 물량
소비자 판매 물량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물량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

④ (10일 이내) 리콜 계획서 제출

○ (공문 수령 후 10일 이내) 리콜 제품 회수 계획 수립 후 리콜 계획서 제출

6-2. 리콜 계획서 제출

- 사업자는 공문 수령 후 10일 이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리콜계획서를 제출 (참고: 결과보고서는 1개월 이내)
- 개선조치 권고 대상 사업자의 경우, 10일 이내 결함내용을 신속히 개선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공문수령 후	10일 이내	1개월 이내
	리콜계획서 제출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자 → 국표원)	(사업자 → 국표원)
리콜명령·권고	• 주요 작성내용 - 제조(수입) 수량, 판매수량 - 리콜 방법과 기간 - 리콜 공표 방법 • 첨부서류 -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기록서 사본 - 판매처별 판매량 · 판매일 등의 기록	• 주요 작성내용 - 리콜 실적 - 리콜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 재발 방지 대책 • 첨부서류 - 회수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반품내역서, AS확인서 등) * 소비자 개인정보의 경우 비식별조치(마스킹 조치)
개선조치권고	• 주요 작성내용 - 제조(수입) 수량, 판매수량 - 개선조치 방법과 기간 • 첨부서류 -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기록서 사본 - 판매처별 판매량 · 판매일 등의 기록	• 주요 작성내용 - 개선조치 실적 - 재발 방지 대책 • 첨부서류 - 개선조치 이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개선된 제품스티커 등)
불이행 시	• 리콜 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결과보고서를 미보고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2-1. 리콜계획서 제출 절차 안내

☑ 사업자는 공문 수령 후 10일 이내 아래 절차에 따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접속한 후, 6-2-2 리콜계획서 작성예시를 참조하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함

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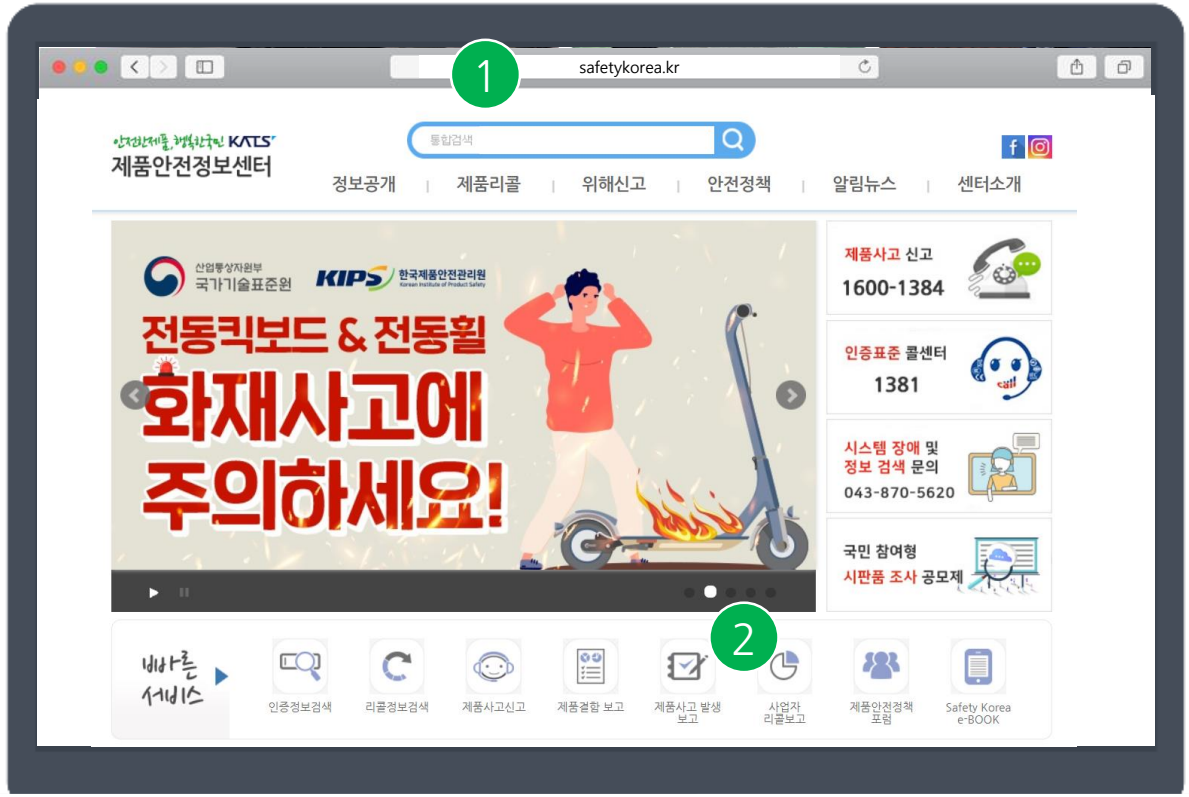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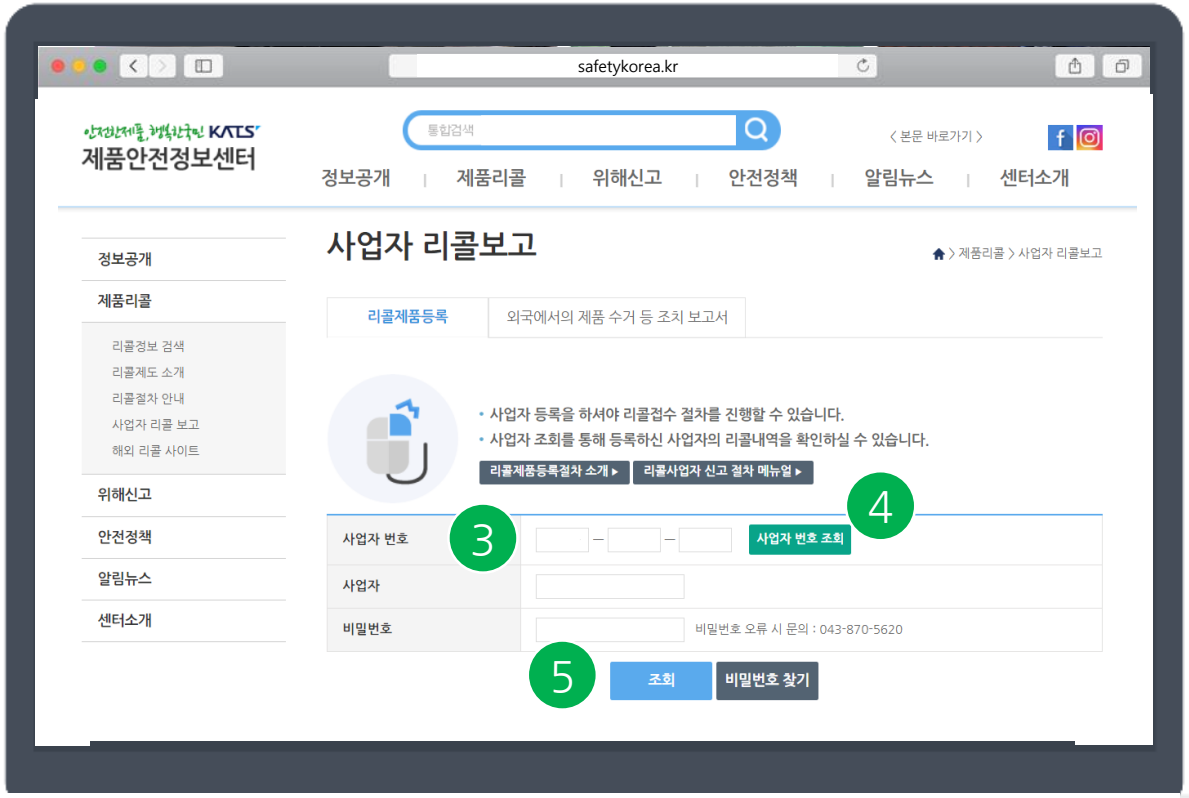

no	설명
①	주소를 입력 (www.safetykorea.kr)
②	사업자 리콜보고 클릭

no	설명
③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④	사업자 번호 조회 클릭
⑤	비밀번호 입력 초기비밀번호 : 00000 (로그인 후 변경 가능)

리콜계획서 작성 및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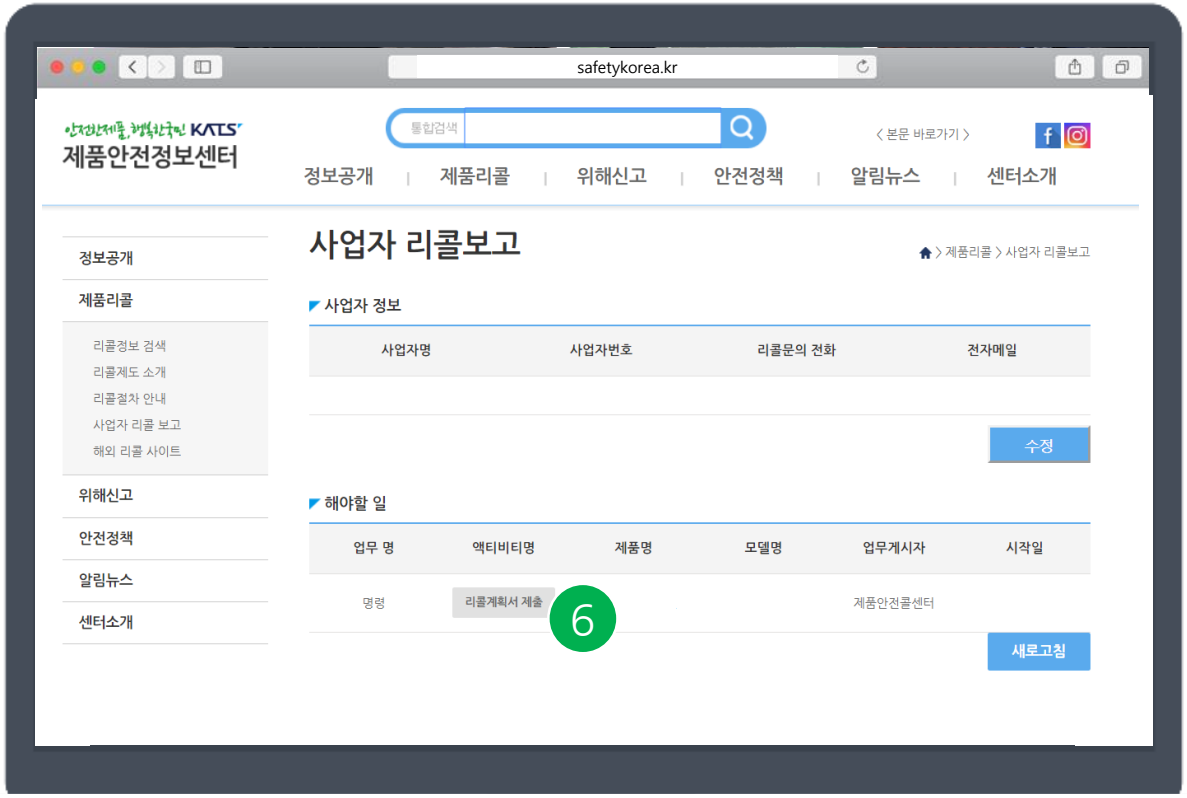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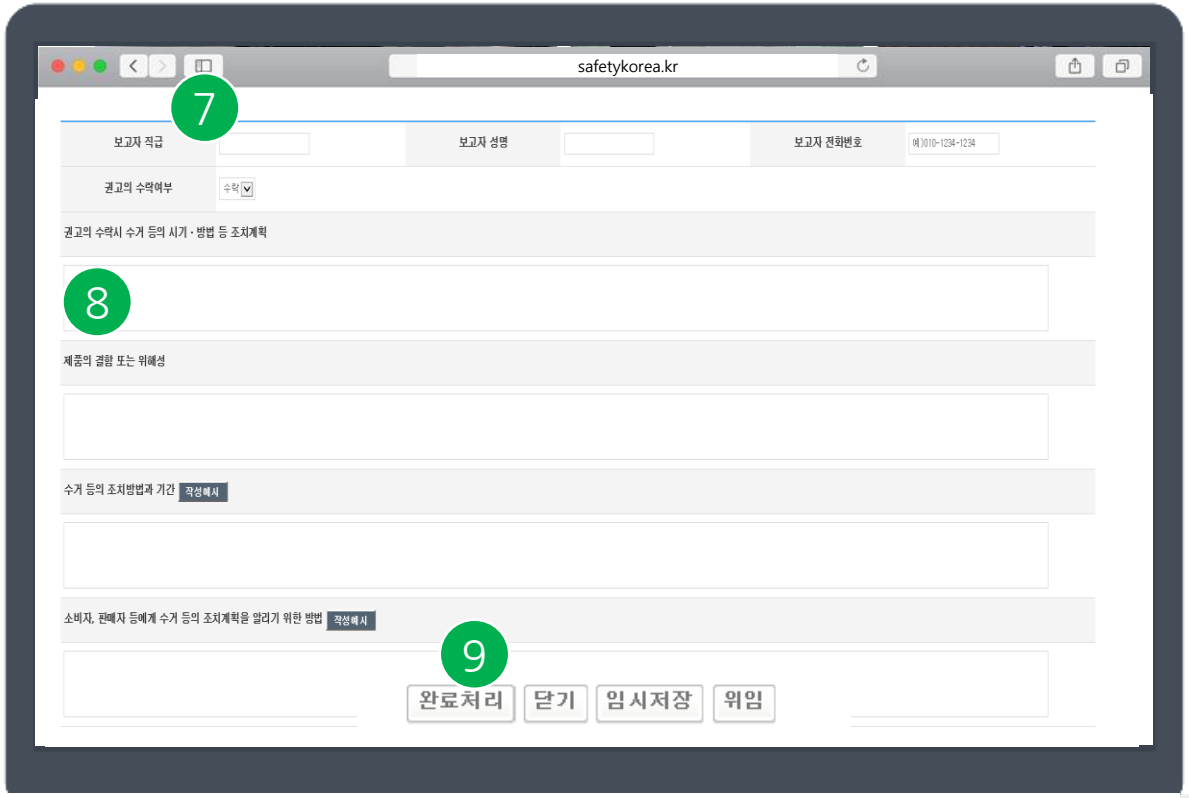

no	설명
⑥	해야할 일 - 액티비티 명 '리콜계획서 제출' 클릭 후 작성 및 제출(10일 이내)

no	설명
⑦	보고자 직급, 성명, 전화번호(핸드폰) 입력
⑧	리콜 계획서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리콜 계획서 작성
⑨	완료처리 클릭

6-2-2. 리콜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리콜 명령·권고 사업자 작성용

보고자 직급 : 팀장	보고자 성명 : 홍길동	보고자 전화번호 : 010-1234-5678
권고의 수락 여부 : 수락		

권고의 수락시 수거 등의 시기 · 방법 등 조치 계획 (권고에 한함)
리콜 권고를 받은 즉시 온 · 오프라인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우선 거래처에 납품한 제품의 회수를 위해 거래처에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된 제품은 고객 정보를 확인 후 유선 또는 문자로 고객들에게 해당 제품의 리콜 사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된 제품의 경우 오픈마켓 측에서 구매 고객 정보를 요청해서, 고객정보를 받는 즉시 유선 또는 문자로 리콜사실을 알릴 계획입니다.

제품의 결함 또는 위해성
[최중결함]
제품결함: 온도특성(최고온도) 기준값 70℃ 이하 측정값 75℃

수거등의 조치방법과 기간
총 수입량: 2,250개
총 출고 · 판매량: 2,100개 (유통망 재고 – 1,300개, 소비자판매 – 800개)
자사보유 재고량: 150개
~ 2주: 유통망 재고 회수목표량(800개), 소비자판매 회수목표량(400), 합계(1,200)
2주 ~ 4주: 유통망 재고 회수목표량(400개), 소비자판매 회수목표량(300), 합계(700)
4주~이행점검: 유통망 재고 회수목표량(100개), 소비자판매 회수목표량(100), 합계(200)
총 회수 목표량: 2,250개 (이행점검 이후 회수 목표량도 포함)

소비자, 판매자 등에게 수거등의 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1. 소비자 대상 홍보
문자연락: 연락기간 (19. 12. 23~20. 01. 23), 연락횟수(800회)
전화연락: 연락기간 (19. 12. 23~20. 01. 23), 연락횟수(800회)
언론사 홍보: 홍보기간 (19. 12. 23~20. 01. 23), 홍보횟수(2회)
홈페이지 공고: 공고기간 (19. 12. 23~), 공고횟수(1회)
2. 판매자 대상 홍보
공문 조치: 조치기간 (19. 12. 23~20. 01. 23), 조치횟수(40회)
전화연락: 연락기간 (19. 12. 23~20. 01. 23), 연락횟수(40회)

제조기간: 18. 01. 11 ~ 19. 11. 30	제조수량: 2,250개
판매기간: 18 01. 23 ~ 19. 12. 22	판매수량: 2,100개

첨부파일 업로드
1.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기록서 사본
2. 판매처별 판매량 · 판매일 등의 기록

(예시) 개선조치 권고 사업자 작성용

보고자 직급 : 팀장	보고자 성명 : 홍길동	보고자 전화번호 : 010-1234-5678
권고의 수락 여부 : 수락		

권고의 수락시 수거 등의 시기 · 방법 등 조치 계획
예시1) 개선조치 권고를 받은 즉시 자사 재고 보유분 수량을 파악하고 재고분에 대해 스티커를 제작하여 라벨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예시2) 개선조치 권고 받은 제품을 개선하여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에 개선된 부분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시3) 개선조치 권고 대상 제품은 이미 단종된 제품으로 지금은 판매하고 있지 않으며, 재고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품의 결함 또는 위해성
예시1) 표시사항 누락
– 제조년월, 수입자 주소, 제조자명, AS문의처
예시2) 경결함
– 단자 및 영구 고정형 단자 부적합
예시3) 사용상 주의사항 누락
– 얼굴 분장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수거등의 조치방법과 기간
예시1) 제조년월, 수입자주소, 제조자명, AS문의처를 추가한 표시를 업체에 발주한 상태이며, 개선된 표시를 받는 대로 (수령예정일 : 202X. XX. XX.) 재고부터 개선된 표시를 부착하여 제품 출고하겠습니다.
예시2) 개선된 제품의 XX인증기관에 시험의뢰 하였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202X. XX. XX.예정) 결과보고서에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겠습니다.
예시3) 지금은 단종되어 판매되지 않는 제품으로 현재 판매계획이 없습니다. 추후 재생산 · 판매 하게 될 경우, 안전기준에 맞는 라벨을 제작하여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판매자 등에게 수거등의 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해당사항 없음

제조기간: 18. 01. 11 ~ 19. 11. 30	제조수량: 1,000개
판매기간: 19. 12. 23 ~ 20. 01. 23	판매수량: 500개

첨부파일 업로드
1.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기록서 사본
2. 판매처별 판매량 · 판매일 등의 기록

6-3. 리콜 이행 단계

☑ 사업자는 제조 · 수입 · 유통한 리콜제품을 **전량 회수할 책임**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공문 수령 후 1달 내) 이후에도 리콜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함

① (지속) 리콜 제품 수거 · 환불 · 수리 · 교환

○ **사업자**는 유통망(총판, 도매, 소매) 재고분 또는 소비자 판매분 등 모든 유통 · 판매 제품에 수거 · 환불 · 수리 · 교환 등의 리콜이행 책임 수행

- 리콜 제품 수거 · 환불 · 수리 · 교환 방법

수거/환불	- 자체 재고 및 수거, 환불된 제품에 대해서 리콜 이행점검전까지 보관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반품확인서, 전산대장(ERP) 등 증빙자료 보관
수리/교환	- 개선된 제품(처분 사전 통지일 이후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에 한함)으로 수리/교환 진행 - 택배영수증, 수리/교환 확인서, 전산대장(ERP) 등 증빙자료 보관
파기	- 전문폐기업체를 통해 증빙자료(영상&서류) 갖춰 폐기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 폐기할 경우 회수량으로 불인정 (Q&A 참조)

○ **유통망 업자**(총판, 도매)는 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자체 재고분, 소매망 재고분, 소비자 판매분 등이 사업자에게 신속히 리콜 조치 되도록 적극 협조해야함

(유통망 업자(총판, 도매) → 소매업자) 유통망에 제품 수거 요청 공문(양식4) 발송

(유통망 업자(총판, 도매) → 소비자) 소비자에게 리콜 사실 안내 문자(양식5) 발송

② (1달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공문 수령 후 1달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6-4.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자는 공문 수령 후 1달 이내 아래 절차에 따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접속한 후, 6-4-1 결과보고서 작성예시를 참조하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함

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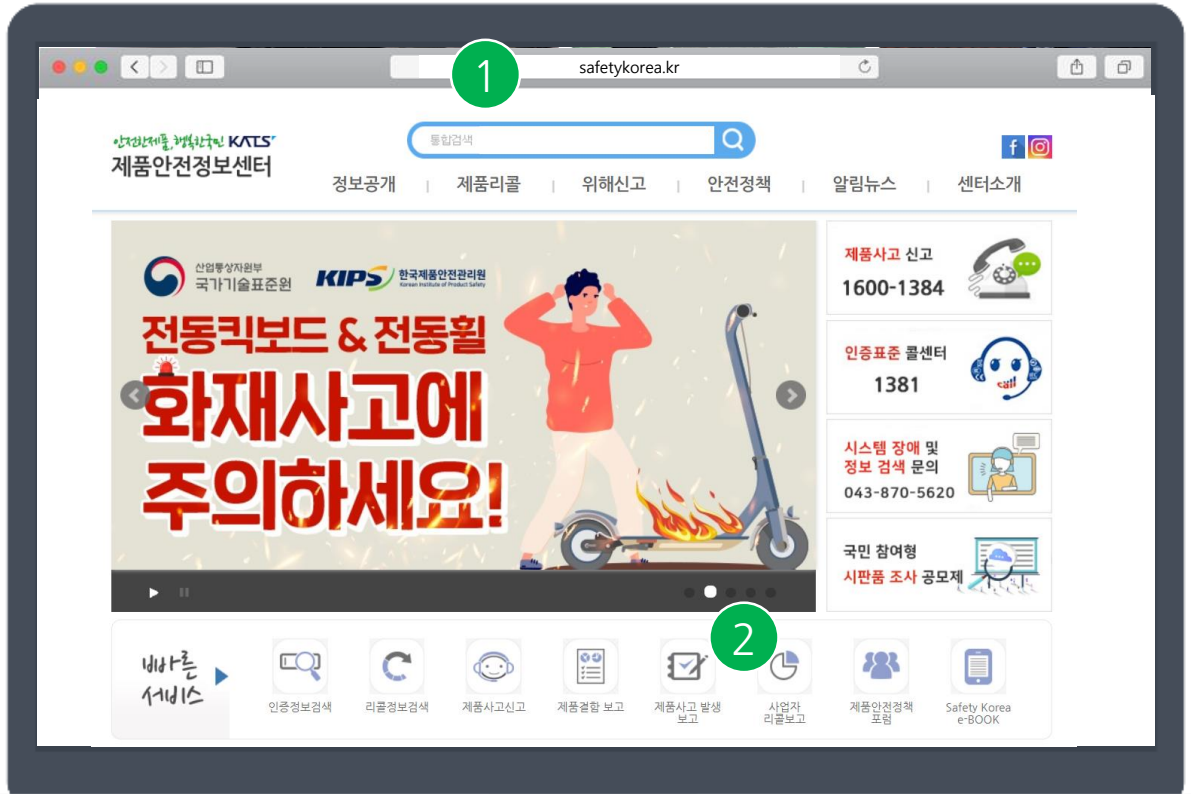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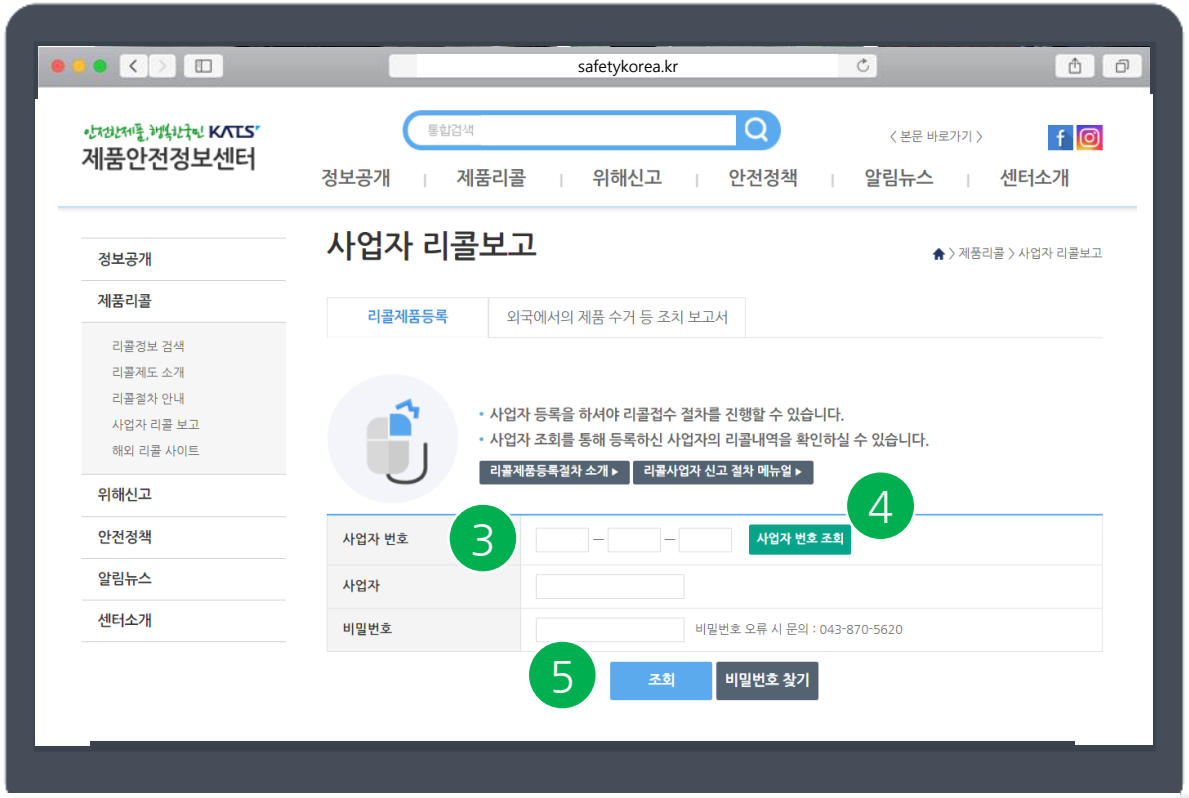

no	설명
①	주소를 입력 (www.safetykorea.kr)
②	사업자 리콜보고 클릭

no	설명
③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④	사업자 번호 조회 클릭
⑤	비밀번호 입력 초기비밀번호 : 00000 (로그인 후 변경 가능)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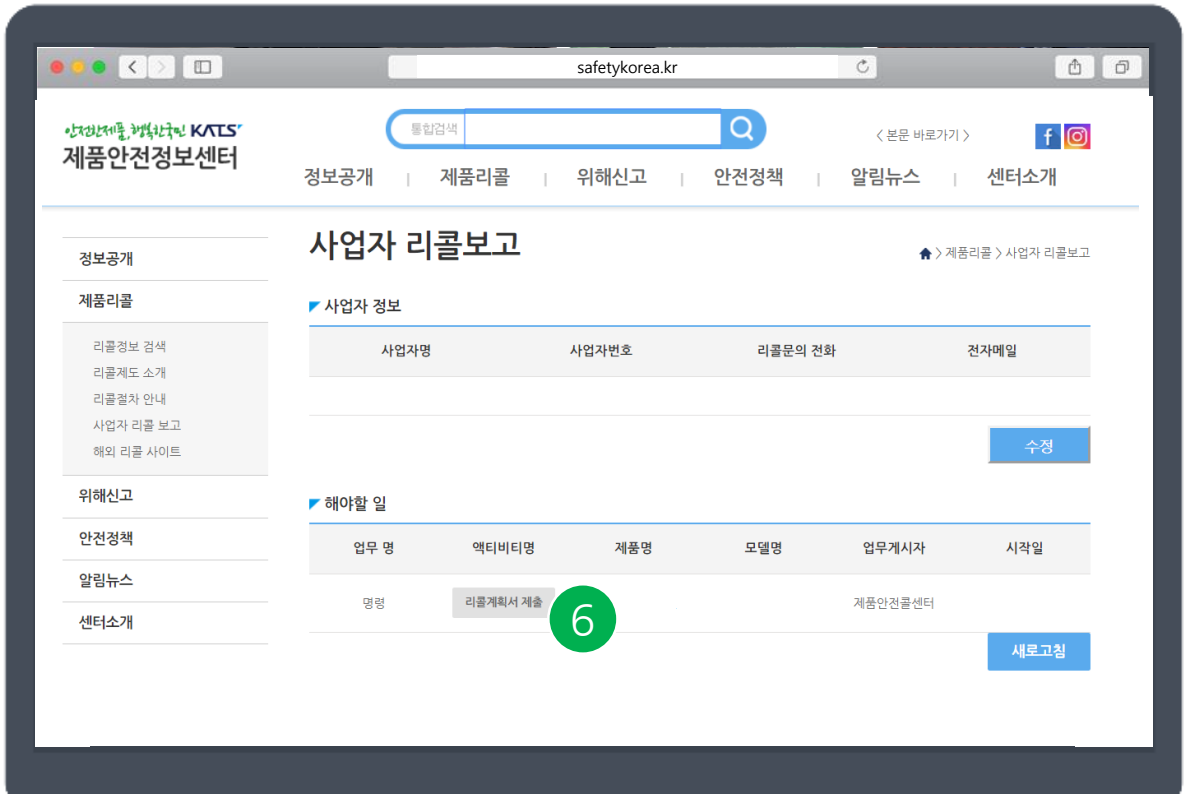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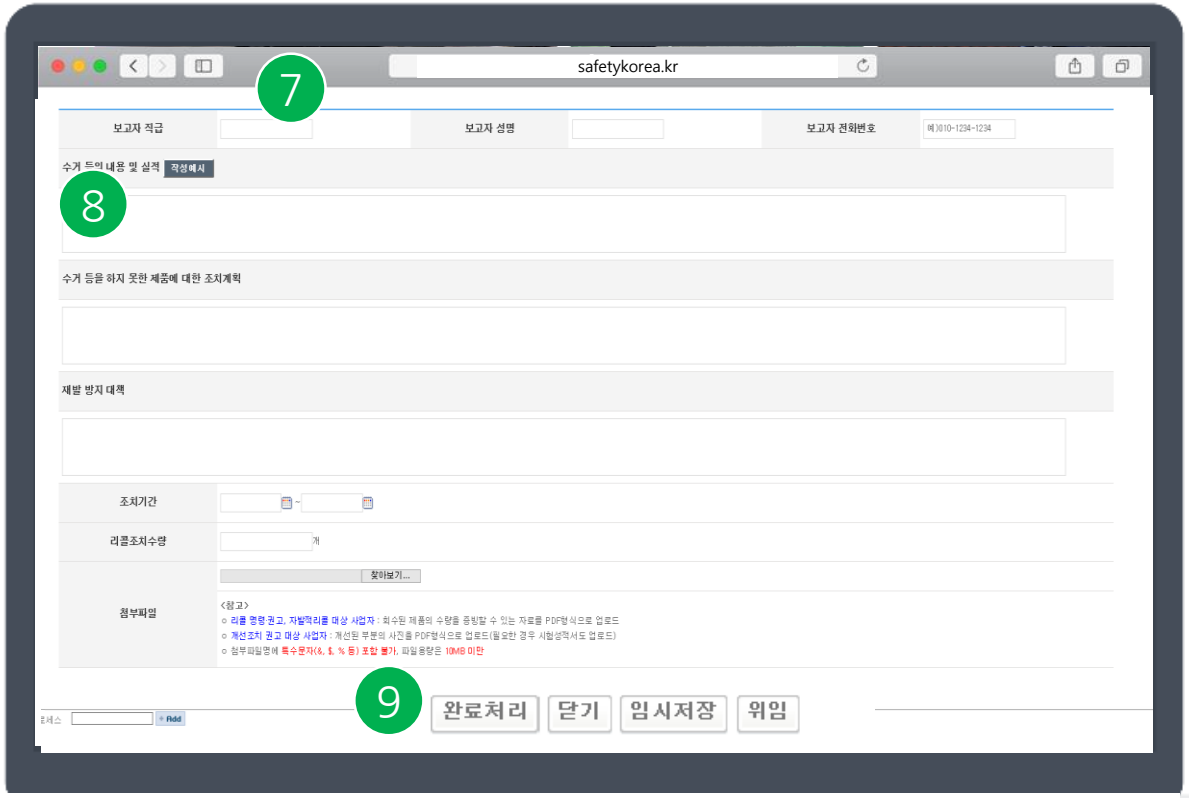

no	설명
⑥	해야할 일 - 액티비티 명 '결과보고서 제출' 클릭 후 작성 및 제출(1달 이내)

no	설명
⑦	보고자 직급, 성명, 전화번호(핸드폰) 입력
⑧	결과보고서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⑨	완료처리 클릭

6-4-1. 결 과 보 고 서 작 성 예 시

(예시) 리콜 명령·권고 사업자 작성용

보고자 직급 : 팀장	보고자 성명 : 홍길동	보고자 전화번호 : 010-1234-5678

수거등 내용 및 실적

총 수입량: 2,250개 총 출고 · 판매량: 2,100개 (유통망 재고 – 1,300개, 소비자판매 – 800개)
자사보유 재고량: 150개
~ 2주: 유통망 재고 [목표량(800), 회수량(650)], 소비자판매 [목표량(400), 회수량(270)] 회수합계(870)
2주 ~ 4주: 유통망 재고 [목표량(400), 회수량(615)], 소비자판매 [목표량(300), 회수량(480)] 회수합계(1095)
8주~이행점검: 유통망 재고 [목표량(100)], 소비자판매 [목표량(50)]
총 회수 목표량: 2,250개
총 회수량: 2,115개 (자체재고 150개 / 환불 1,965개 / 수리 0개 / 교환 0개)

리콜사실 공표 실적
소비자 대상: 소비자 800명에게 문자연락을 실시하였으며, 회신이 없는 소비자(530명)의 경우 추가 문자발송 하여 총 1330통 발송하였습니다.
유통망 업체 대상: 리콜 제품을 납품하였던 유통망 · 거래처 8곳에 모두 공문을 발송하여 유통망 재고분을 회수하였으며, 유통망을 통해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도 모두 리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는 조치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수거등을 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리콜 이행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사 홈페이지에 리콜대상 제품정보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미회수분 보유 거래처에 연락을 통해 반품을 독려하고, 소비자판매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메일발송 등 추가적인 연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

기존 인증이 취소되어 판매를 중단하고 있으며, 신규 제품에 대한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QC부서를 신설해 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조치기간: 2019. 12. 23 ~ 2020. 01. 23

리콜 조치 수량: 2,115개 (재고물량 + 회수된 물량)

첨부파일 업로드
<참고>
- **리콜 명령 · 권고 사업자:** 회수된 제품의 수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PDF형식으로 업로드

(예시) 개선조치 권고 사업자 작성용

보고자 직급 : 팀장	보고자 성명 : 홍길동	보고자 전화번호 : 010-1234-5678

수거등 내용 및 실적

예시1)
202X. XX. XX일자로 누락된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제작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고 500개에 개선된 스티커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산될 모든 제품에도 개선된 표시를 인쇄해 부착할 예정이며 개선된 표시 사진을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시2)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요청한 제품의 성적서를 발급받아 자사 보유분 재고 500개를 개선하여 출고 준비 중입니다. 시험성적서를 보고서에 첨부하겠습니다.
예시3)
추후 해당 제품이나 유사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표시사항을 안전기준에 맞춰 인쇄할 예정입니다.

수거등을 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해당사항 없음

재발 방지 대책

예시1) QC부서를 신설해 제품 출고 전 제품에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예시2) QC부서를 신설하여 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예시3)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제품안전기준 교육을 강화하여 표시사항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겠습니다.

조치기간: 2019. 12. 23 ~ 2020. 01. 23

리콜 조치 수량: 500개

첨부파일 업로드
<참고>
- **개선조치 권고 사업자:** 개선된 부분의 사진을 PDF형식으로 업로드(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도 업로드)

7. 리 콜 이 행 점 검

7-1. 리 콜 이 행 점 검 절 차

- 리콜 이행점검 주체는 국표원(관리원)이 되며, 점검은 사업장 직접 방문이 원칙이며, 서면 점검도 병행
- 이행점검 결과, 리콜 이행실적이 미흡한 사업자나 리콜 이행에 비협조적인 유통망 업체에게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함

리콜 이행점검 ①

○ 국표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리콜계획서' 접수 후 1개월 이후부터 리콜 이행점검을 개시하며, 1차 리콜 이행점검 실적(양호, 보통, 노력필요)에 따라 이후의 이행점검 주기를 차별화하여 점검진행

<이행점검 주기 예시>

1차 이행점검 평가	차수별 이행점검 주기
양호	5달 이내
보통	3달 이내
노력필요	2달 이내

○ 이행점검은 주기적으로 관리원에서 업체를 직접방문 또는 서면 등을 통해 실시

○ 사업자는 리콜 제품과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리콜 이행실적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리원에 보고

② 리콜 이행점검 후 조치(국표원 → 사업자)

○ 사업자의 리콜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경우

- 불이행시

(리콜 명령) 불이행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리콜 권고) 불이행시,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제품 수거등의 명령 등)에 따라 리콜 명령 및 언론 공표

- 미흡시: 사업자에게 보완명령 처분

(보완 명령) 불이행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통망 업체의 리콜 이행 비협조가 확인된 경우

- 해당 유통망 업체(총판, 도매, 소매)에게도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리콜 명령 · 권고 처분

7-2. 리콜 이행점검 시 확인사항

☑ 리콜제품에 대한 수거 · 수리 · 교환 · 환불 · 파기 등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리콜 실적으로 불인정

확 인 사 항		증 빙 자 료 예 시	
제품회수율 확인	리콜제품 제조/수입 수량 확인	국 내 제 조	생산대장, 작업지시서, 입고대장(현황) 등
		수 입 제 품	수입신고필증/인보이스, 입고대장(현황), 작업지시서, 전산대장(ERP) 등
	판매(출고) 제품 수량 확인	출고대장(현황), 판매대장(현황),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전산대장(ERP) 등	
	회수된 제품 수량 확인	**회수된 제품 실물** 리콜 제품 수거 대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택배영수증(교환 등), 수리/교환확인서 등	
공표방법 확인		신문/TV 광고계약서, 홈페이지(공지사항 등), 공문 발송, 우편발송 현황(영수증 등), 전화통화, 문자발송, 이메일발송 현황 등	
관련 보고서 확인		리콜계획서, 결과보고서	

8. 보 완 명 령

☑ 국표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의3항에 따라 리콜 이행점검에서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에게 보완명령을 함

	1개월 이내	1개월 이후
보 완 명 령 공문수령 후	결과보고서 제출	리콜 이행점검
보완명령	• 주요 작성내용 - 리콜 실적 - 미회수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 재발 방지 대책	• 제품회수율 확인 - 회수된 제품 수량 확인 • 리콜 공표 방법 확인 • 제출한 보고서 확인